2020년 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298회 정례회

I·SEOUL·U
너와 나의 서울

서울문화재단
정관 개정 보고

2020. 11. 30.

서울문화재단

정관 개정 보고사항

□ 보고 근거

○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정관」 제38조(정관의 변경)

-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개정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노동자이사제”에서 “노동이사제”로, “노동자이사”에서 “노동이사”로 개정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노동이사의 권한인 ‘이사회 안건 제출권’과 ‘정보열람권’을 정관 제25조에 포함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에 따라 정관 제40조에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목적이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는 내용으로 개정

○ 주무관청의 요청에 따라 정관 상 서울문화재단의 소재지를 구(동대문구)까지 명기

□ 추진 일정(안)

○ 2020. 11. 30. : 시의회 사전보고

○ 2020. 12월 중 : 이사회 의결 예정

○ 2021. 1월 초 : 서울시 승인 통보 후 소관 구청에 신고

서울문화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및 서울특별시 공기업담당관-8948호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 개정 알림”에 따라 “노동자이사제”에서 “노동이사제”로, “노동자이사”에서 “노동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또한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노동이사의 권한인 ‘이사회 안건 제출권’과 ‘정보열람권’을 정관에 반영하고자 함.

○ 서울문화재단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단체로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었으나 2018.02.13.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해당 항목이 삭제됨. 단, 개정 전 법령에 의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했던 경우 2020.12.31.까지는 지정기부금단체로 간주함. 따라서 2021.01.01. 이후에도 계속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에 맞게 정관을 개정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정을 받고자 함.

○ 주무관청의 요청에 따라 문화예술관련 비영리법인인 서울문화재단의 소재지를 구 단위까지 명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10조(임원의 임기),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개정**

- “노동자이사”를 “노동이사”로 명칭을 일괄 변경

○ **제25조(이사회의 소집) 개정**

- 노동이사는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으로, 이사회 소집 전 안건을 제출할 수 있고 관련 정보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 추가

○ **제40조(잔여재산의 귀속) 개정**

-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 또는 목적이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는 내용을 “서울특별시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로 수정함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개정**

- 재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동대문구”를 추가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정관 제24조, 제38조, 제41조
- 공기업담당관 8948(2020.07.22.)호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 운영지침 개정 알림”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부칙 〈대통령령 제28640호, 2018.02.13.〉 제1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1호 바목)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이사회 의결 후, 서울시 및 소관 주무관청 승인 후 시행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필요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동대문구 ---------- ---------- ----------.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2. (생 략) 3. 이사 15인 이내(이사장 및 대표이사, 노동자이사 1인을 포함한다) 4. (생 략)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 1.~ 2. (현행과 같음) 3. ---------- 노동이사 ---------- 4. (현행과 같음)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3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고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자이사는 임기 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법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2, 개정 2018. 6. 28> ② ~ ④ (생 략) ⑤ 노동자이사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노동자이사의 임기와 상관없이 노동자이사의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 ---------- -. ---------- ---------- ---------- ---------- - 노동이사----------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노동이사 ---------- ------ 노동이사 ---------- -- 노동이사 ---------- -.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 ~ ④ (생 략) <신 설> ⑤ 이사장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또는 실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8. 6. 28>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노동이사는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으로, 이사회 안건 제출권과 관련 정보 열람권을 가진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 ---------- ----------.
제40조(잔여재산의 귀속)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서울특별시 또는 목적이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	제40조(잔여재산의 귀속) ---------- ---------- ---------- ----------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기증한다.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 첨 1〕 제안근거 _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정관

제24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3. 생략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제38조(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시행규정)

①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② 직제규정을 제정 또는 개· 폐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 첨 2〕 공기업담당관 8948(2020.07.22.)호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 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I·SEOUL·U

서울특별시

서울시 홈페이지 seoul.go.kr

수 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 개정 알림

1. 공기업담당관-827(2020.1.16.)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제3회 서울특별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가 붙임과 같이 ’20. 7.16.자로 공포·시행**되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보내드립니다.

3. 투자·출연기관에서는 조례 및 세부운영지침 개정사항을 숙지하셔서 **임직원 및 이사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반영하여 노동이사의 직무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56조 제1항 및 제59조 제3항, 지방출자출연법 제8조 제1항)

※ 조례 및 세부운영지침 시행일자 : 2020. 7. 16.자

붙 임 : 1.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 1부.
2.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3. 조례 개정 공포안 1부. 끝.

〔별 첨 3〕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2020.7.16.)

8 (권한과 책임) 법령규정 반영, 비상임이사와 동일

제9조(권한) ① 노동이사는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행사는 시민복리 증진 및 공익성이 우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책임 등) 노동이사는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부과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권한 : 이사회 안건 제출권, 이사회 참여, 의결권(정보권, 발언권 등 포함) 행사

○ 사업계획 / 예산과 결산 / 정관 및 규정의 개정 / 조직 및 기구의 개폐

○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임대 / 중요 대행사업의 위수탁 사항 등

○ 이사회 안건 제출권 정관에 반영

- 노동이사는 소관부서에 이사회 개최 40일 이내에 안건을 제출하여야 함
- 노동이사는 소관부서와 이사회 개최 30일 이내에 제출한 안건에 대해 사전협의를 하여야 함

○ 정보열람권 정관에 반영

- 노동이사는 소관부서에 이사회 안건과 관련한 정보열람을 요구할 수 있음
- 단, 기관은 해당 정보열람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음
- 노동이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비밀유지서약을 하여야 함

〔별 첨 4〕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31., 2005. 2. 19., 2006. 2. 9., 2007. 2. 28., 2008. 2. 22., 2008. 2. 29., 2009. 2. 4., 2010. 2. 18., 2010. 8. 25., 2010. 12. 30., 2011. 3. 31., 2012. 2. 2., 2012. 8. 3., 2013. 2. 15., 2014. 2. 21., 2016. 2. 12., 2017. 2. 3., 2017. 5. 29.〉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18.02.13. 개정으로 삭제〉

〔별 첨 5〕 부칙 〈대통령령 제28640호, 2018.02.13.〉 제1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문화·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및 환경보호운동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별 첨 6〕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1호 바목)

①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의 취지는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회원 및 소수의 특정인만을 위해 한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 1. 공익목적이 아닌 회원 또는 회원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거나 친목도모 성격의 단체는 지정대상에서 배제됨 2. 단체명에 생존하는 특정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②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 * 〔잘못된 사례〕 유사한 다른 비영리단체, 유사한 다른 법인, 유사법인 또는 유사한 다른 단체(∴ 가능한 정관에 상기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규정)
③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카페 불인정)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재지정신청**의 경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였을 것) * 주무관청은 홈페이지 주소를 확인하여 추천서(기부금의 용도 및 관리방법 란)에 기재하고, 반드시 불특정다수가 공익목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정기부금단체 명의의 독립된 **한글홈페이지**가 개설될 것. *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해야 하는 것임.
④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행위
⑤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할 것 * 지정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의 사유가 지정요건 사유에만 한정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정관 개정(안)

제정 2003. 8. 1
개정 2009. 9. 24
개정 2010. 1. 25
개정 2010. 11. 25
전부개정 2012. 1. 30
개정 2012. 4. 20
개정 2013. 7. 19
개정 2016. 11. 9
개정 2016. 12. 22
개정 2018. 6. 28
개정 2018. 11. 14
개정 2018. 12. 28
개정 2019. 10. 10
개정 2019. 12. 31
개정 2020. 00. 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 이 법인은 「민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진작시켜 서울의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법인은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칭하며, 영문은 Seoul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약칭 「SFAC」로 표기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동대문구에 두고 필요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 00. 00.>

제4조(사업의 범위) 재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2.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4. 시민의 문화향수 및 창의력 증진
5. 지역문화의 육성 지원 및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신설 2016. 11. 9>
6.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대행사업) ① 재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고방법) 재단이 공고.고시할 사항은 당해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한다. <개정 2018. 6. 28.>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대표이사 1인
3. 이사 15인 이내(이사장 및 대표이사, 노동이사 1인을 포함한다) <개정 2016. 12. 22, 2019. 10. 10., 2020. 00. 00.>
4. 감사 2인 이내 <개정 2012. 4. 20>

제9조(임원의 임면) ①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단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를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재정기획관 <개정 2016. 11. 9>
2. 서울특별시문화본부장 <개정 2012. 4. 20, 2016. 11. 9>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⑤ 임원이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3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고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이사는 임기 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법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2, 2018. 6. 28, 2019. 10. 10., 2020. 00. 00.>

② 제1항에 의해 임원을 연임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를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8. 6. 28>

③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에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④ 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개정 2018. 6. 28>

⑤ 노동이사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노동이사의 임기와 상관없이 노동이사의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 <신설 2016. 12. 22, 개정 2019.10.10., 2020. 00. 00.>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서울시장이 추천하는 자 2명
2. 서울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
3. 재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

② 서울시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문화예술계 인사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신설 2018. 6. 28>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재단의 고유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④ 기타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해 재단의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임원후보의 추천절차) ① 추천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정 결원 직위에 대하여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8.>

② 임명권자는 추천된 임원후보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재단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만약 대표이사까지 부재 시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 4. 20, 2016. 11. 9>

③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제9조제3항의 당연직이사 중 문화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 4. 20, 2016. 11. 9, 2018. 6. 28>

④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개정 2012. 4. 20>

⑤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개정 2012. 4. 20>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삭제 2018. 6. 28>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6. 12. 22, 2018. 6. 28.>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6.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6. 12. 22>
7. 재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8. 노동이사의 경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16. 12. 22, 개정 2019. 10. 10., 2020. 00. 00.>

② 재단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5조(직원의 임면) ① 재단의 직원은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③ 직원의 임면, 승진 등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임 · 직원의 복무) 임.직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재단의 대표이사와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대표이사는 시장의, 직원은 대표이사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8조(임 · 직원의 보수) ① 재단의 대표이사 및 직원의 보수는 보수규정에 의한다.

②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9>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재단의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재단의 이익과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재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제21조(대리인의 선임) 대표이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재단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및 정원

제22조(조직 및 정원) ① 재단의 조직은 별표1, 정원은 별표2와 같으며,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8. 6. 28>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4장 이사회

제23조(설치 및 구성)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4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재단의 기본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6. 중요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7.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8.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법령, 조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시민 또는 작업자의 안전·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 <신설 2016. 11. 9>
11. 기타 이사장이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소집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가 요청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⑤ 노동이사는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으로, 이사회 안건 제출권과 관련 정보 열람권을 가진다. <신설 2020. 00.00.>

⑥ 이사장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또는 실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8. 6. 28>

제26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결의로 의결할 수 있다. 단, 서면결의를 결정하기 전에 지도.감독 주관부서와 투자.출연기관 재정 관련 부서와의 사전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④ 이사장은 제3항에 의한 서면 의결사항을 제25조의 절차에 따라 소집된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이사회 참여제한) 이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하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8조(의사록)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와 감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위원회

제29조(설치)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위원회 또는 기구를 둘 수 있다.

제30조(운영) 위원회 또는 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1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로 하며 그 내역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19.12.31.>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설립 후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 및 개인의 출연금 또는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결산상 잉여금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의결한 재산
4. 사업 수익금, 기타 수입금 중 이사회 또는 시행규정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5. 기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시의 출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위탁사업수입금, 법인사업수입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구성하며,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충당한다.

제32조(재산의 관리) ① 재단의 대표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재단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기금)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의 출연금
2. 중앙정부의 지원금
3.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저촉되지 아니한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출연금
4. 기타 기본재산의 운용 및 재단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재단은 기금의 원금을 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재단은 기금의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⑤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제34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35조(사업계획과 예산)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재단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28>

제36조(결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당해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8>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8.>

③ 결산보고서에는 업무현황,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신설 2019.10.10.>

제37조(손익금의 처리) ① 재단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월 또는 유보한다.

② 재단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준비금 등으로 적립한다.

③ 재단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에 따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준비금으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이월한다.

제7장 보 칙

제38조(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9>

제39조(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잔여재산의 귀속)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서울특별시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기증한다. <개정 2020. 00. 00.>

제41조(시행규정) ①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② 직제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주무관청의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법원의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연도) 재단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 등기일부터 당해 연도말까지로 한다.

제3조(사업계획 등) 재단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재단 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정관에 의한 재단 설립 당초의 임원의 임기는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09. 9. 2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주무관청의 정관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 2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1. 2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 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4. 2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또는 직제 개·폐 등에 의한 적용) 제9조제3항의 당연직 이사가 조례 또는 서울특별시 직제의 개.폐 등으로 변경된 경우, 관련 조항에서 그 직명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3. 7. 1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1. 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2. 2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6. 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1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0. 0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신설 2018. 06. 28.> <개정 2018. 12. 28, 2019.12.31.>

기 구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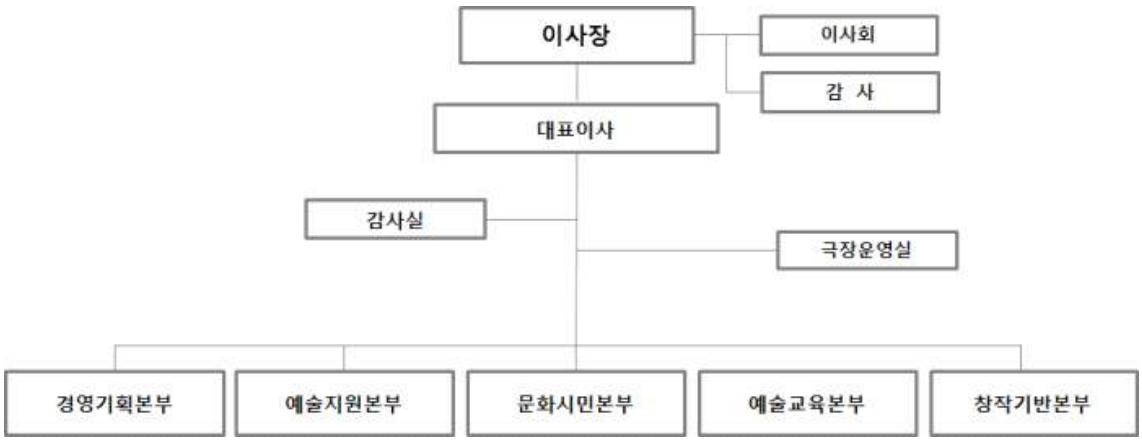

<별표 2> <신설 2018. 6. 28.>,<개정 2018. 11. 14, 2018. 12. 28, 2019. 10. 10, 2019. 12. 31 >

정 원 표

(단위 : 명)

총정원	문화행정직						운영지원직
	계	대표이사	감사실장	1급	2급	3급이하	
226	214	1	1	2	6	204	12

<별표 3> <신설 2019. 12. 31.>

기 본 재 산 목 록

(단위: 원)

구 분	금 액	비 고
계	**77,271,688,930**	
부동산	11,802,220,000	**청계천로 소재**
	50,319,566,160	**동숭길 소재**
금융자산	15,149,902,770	